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9-21호
2019. 3. 15.(금)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차 례

고 시(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실태조사계획 고시(고시 제2019-36호) ····· 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9-37호) ····· 3

공 고(3)

-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공고 제2019-238호) ····· 4
- 공인 등록·폐기 공고(공고 제2019-249호) ····· 7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255호) ····· 8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257호) ····· 10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36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실태조사계획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덕구 관내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빈집실태조사계획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 취 지 :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조사하여 개량·철거 또는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법적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 기 간 : 실태조사 착수 후 6개월('19. 4. ~ 10.)

○ 대 상 : 대덕구 관내 빈집

빈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제외	공공임대주택,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5년 이내 미분양주택, 준주택, 일시적 사용주택

3. 실태조사의 내용

대상선정	⇨	- 시장·군수등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		
사전조사	⇨	- 전기, 상수도, 기타 자료 등을 취합·분석 - 1년 이상 비거주 또는 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빈집으로 추정
↓		
현장조사 및 소유자 면담	⇨	- 빈집판별 : 계량기가 철거(전자식 계량기의 경우 “0”) 8개의 판별기준 중 4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 소유자면담 : 필요시 유선면담 실시
↓		
등급산정조사	⇨	- 등급산정 : 주요 구조부 및 위해성 항목 조사를 통해 1~4등급 산정

4.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 대행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빈집 등 실태조사)

○ 대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행업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빈집 등 실태조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사전조사, 현장조사 및 등급산정조사
- 빈집실태조사 결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화 및 기술지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기타사항

빈집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전충남지역본부(☎042-718-4039)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재생과(☎042-608-5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3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오정동 410-6	대전로1134번길 20	2019. 3. 15.	건물신축	대전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1,340 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장동 588	산디로 240	2019. 3. 15.	건물신축	산디마을 명에서 유래	
덕암동 175-32	덕암북로4번길 54	2019. 3. 15.	건물신축	덕암북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상서동 343-9	신탄진로 532	2019. 3. 15.	건물신축	신탄진으로 가는 주요 도로의 기능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238호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9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안)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대덕구 세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열 람

◦ 기 간 : 2019년 3월 15일 ~ 4월 4일
◦ 장 소 : 대덕구 세무과 및 인터넷 (대전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 http://tax.daejeon.go.kr)
◦ 열람내용 : 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토지 · 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9년 3월 15일 ~ 4월 4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대덕구 세무과 및 인터넷(대전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
◦ 제출방법 : 대덕구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대덕구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580개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19. 1. 1.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에서 3인이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개별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대덕구 세무과 및 대전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대지면적(㎡)
	용도지역	건물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층수
	주건물구조	주건물용도
의견제출 내용	열람가격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 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수 → 한국감정원 검증 →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의견제출인 시장・군수・구청장

210㎜×297㎜(백상지 80g/㎡)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249호

공인 등록·폐기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인 등록·폐기일자 : 2019. 3. 15.(금)
2. 공인 등록·폐기내역 : 2개(등록 1개 / 폐기 1개)

연번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변경일자	사 유
1	공인등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인 민원전용 (인증기용)	훈민정음체 / 3.0cm 정방형		2019.3.15.	인증기 신규 구입
3	공인폐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인 민원전용 (인증기용)	훈민정음체 / 3.0cm 정방형		2019.3.15.	인증기 폐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19-255호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늘봄2길	매립식 시민자율 화재진압함 설치	대화동 35-370 옆 도로	-	아스콘	2.0	'19.3. ~ '19.5. (착공일로부터 30일)	2.4 (착공일로부터 30일)	1.0

2019년 3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사 진 대 지

위 치 도

현황사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 - 25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 및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자 정의 및 지원대상범위, 지원신청방법 등을 개정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라 위임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을 ‘대전 광역

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급식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을 지원대상에 추가함(안 제4조).

다.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지원신청 방법을 정비함(안 제6조).

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구성 방식에 맞게 정비함(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19. 03. 15. ~ 2019. 04. 04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4. 4.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교육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공동체과

(전화 : 042-608-6374, FAX : 042-608-3822, E-mail : kwonhr@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공동체과 담당자 권해림 (전화 : 042-608-63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을 “학교급식 등의”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급식 등”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학교급식”을 각각 “학교급식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학교급식에”를 “학교급식 등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급식”을 “학교급식 등”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구”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제5조제2항 중 “관할 교육청”을 “동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학교 및 시설의 장은”으로,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시교육청을 통하여 제출”을 “제출”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7조, 제12조 및 제13조로 하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2. 동부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담당 과장
3. 교원단체 추천인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6.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생산자 단체 추천인

7. 시민단체 추천인

8.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공동체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ㆍ시비”를 “국비ㆍ시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지원대상학교”를 “지원대상 학교”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구청장 및 교육장·교육감”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를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교급식 등의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1. “학교급식 등”이라 함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2. ---------- 학교급식 등----------.

3. "우수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 바. (생 략)	3. ---------- 학교급식 등----------. 가. ~ 바. (현행과 같음)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4. ---------- 학교급식 등에 ----------.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생 략)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 학교급식 등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급식경비의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신 설> 3. (생 략)	제4조(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1. -------- 따른 ---------- 2.---------- 따른 -----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조(지원방법)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관할 교육청 또는 지원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지원하되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구매를 통한 공동조달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5조(지원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동부교육지원청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시교육청을 통하	제6조(지원신청) ① ---------- 학교 및 시설의 장은 ---------- 제출 ----------

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업무관련 국장 또는 실·단·과장, 관할 교육청의 업무관련 국장 또는 과장이 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교원단체 추천인 3. 학부모단체 추천인 4. 급식관련 종사자단체 추천인 5. 생산자단체 추천인 6. 시민단체 추천인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위원회를 주관하며 부위원장까지 유고시 연장자가 이를 주관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	

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2. 동부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과장 3. 교원단체 추천인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6.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생산자 단체 추천인 7. 시민단체 추천인 8.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공동체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구체적 지원기준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국비·시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생략) ② 지원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12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대상 학교 ----------. ③·④ (현행과 같음)0
제10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 및 교육장·교육감은 ----------.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	제13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 ② ----------

받은 자가 제9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2조---------- ----------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공동체과	
담 당 자 연 락 처	권 해 림 042-608-6374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2019.0.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